公園區域內 山林施業 指針

(1981年 3 月24日 關聯條項改正)

第 1 條(目的) 이 指針은 自然公園法 第 4 條 내지 第 9 條에 依據 指定된 公園地域內에서 自然公園法 第 22 條와 第 23 條第 1 項第 3 號 및 第 50條第 2 項의 規定에 依한 山林의 伐採와 造林等을 行함에 있어 山林施業의 合理化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適用範圍) ①公園区域內의 山林施業에 關하여는 다른 法令에 特別히 規定한 事項을 除外하고는 이 指針에 依한다.

②自然公園法 第 16 條第 1 項第 1 號의 規定에 依한 自然保存地区는 이 指針에 依한 山林施業 對象에서 除外한다.

第 3 條(造林) 秀麗하고 健全한 山林을 造成함으로써 國土를 保全하고 國民保健 向上에 寄與하기 為하여 無立木 伐採地에 다음 各號의 基準에 따라 造林을 實施한다.

1. 造林樹種은 審美的 價値와 林業 經濟的 價値, 効用面을 考慮하여 地域特性에 알맞는 樹種으로 한다.
2. 造林方法은 人工植栽 造林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植栽造林에 依하지 아니하여도 更新이 確實한 임분에는 天然下種更新과 植栽造林을 兼하여 實施할 수 있다.
3. 1 *ha*當 植栽本数는 다음 基準에 依한다.
   가. 用材樹 種類 : 3,000 本 以上
   나. 有實樹 種類 : 400 本 以上
   다. 활엽수 種類 : 1,000 本 以上
4. 造林을 實施한 個所가 활착율이 80 % 未滿일 때에는 補植을 實施하여야 한다.
5. 伐採地에는 伐採後 1 年以內에 伐採者가 義務的으로 造林을 完了하여야 한다.

第 4 條(풀베기) 造林地는 植栽後 3 年間 6 ~ 8 月頃에 풀베기를 實施하여야 한다.

第 5 條(雜木속아내기) 平均 흉고직경 6 *cm* 未滿의 임분에 對하여는 雜木속아내기를 實施한다.

第 6 條(가지치기) 人工造林地에 限하여 樹高成長을 促進하여 빗빗한 완만재를 育成하여 옹이가 없는 優良한 木材生産과 景觀造成을 目的으로 다음 各號와 같이 가지치기를 實施하여야 한다.

1. 7 年 以上의 樹木으로 最下層의 가지가 1 *m* 程度 自然古死하기 始作할 때부터 始作하여 가장 큰 가지밑에 限하여 가지를 除去하여야 한다.
2. 下層에 生立한 立木에 充分히 햇빛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生長 關始前인 12 ~ 3 月에 實施하여 樹間에 密着시키어 절단면을 平活하게 껍질이 벗겨지지 않도록 注意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第 7 條(間伐) 造林地域에 密生된 林分에 對하여 適定間隔의 維持와 立木의 形質向上 材積生長 促進 樹木 相互間 競爭완화를 目的으로 다음과 같이 間伐을 實施한다.

1. 平均 흉고직경 6 *cm*以上 20 *cm*未滿의 林分中 別表 1 의 正常立木本数度 以上 生立된 林分에 對하여 實施한다.
2. 過度한 間伐을 피하고 5 年 내지 10 年 間隔으로 弱度의 間伐을 2 ~ 3 回 反復한다.
3. 間伐 對象立木은 피압목, 개재목, 被害木 및 平均흉고직경 以下의 立木에 限한다.
4. 間伐의 時期는 生長 停止期인 12 ~ 3 月에 實施한다.
5. 間伐量은 全體材積의 15 % 以下 全體本数의 30 % 以下에 實施하여야 한다.

第 8 條(林木伐採) 立木伐採는 다음 各號의 境遇에 行한다.

1. 道路, 港湾, 鐵路 開設을 為하여 必要한境遇
2. 土石採取, 建築 宅地造成許可上 必要한 境遇
3. 電氣通信法에 依하여 電線通過에 支障이 있는 立木
4. 被害立木으로서 存置할 價格가 없는 立木
5. 公園地域에 公共施設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6. 不良立木을 除去하고 優良한 樹種으로 樹種更新을 하고자 할 境遇
7. 自然景觀 損傷에 支障이 없는 範圍內에서 伐採令에 達하여 收益을 目的으로 할 境遇

第 9 條(樹種更新上의 留意點) 第 8 條第 6 項의 規定에 依한 樹種更新의 境遇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留意하여야 한다.

1. 不良立木이 風致林이거나 人工造林이 困難한 地域 또는 自然環境地域의 主要進入路인 境遇에는 樹種更新을 理由로 伐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樹種更新은 1 個所當 3 *ha*未滿의 단장으로 하되 景觀에 支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第 10 條(伐期令) 第 8 條第 7 項의 規定에 依한 伐期令은 平均 흉고직경이 다음 各號 以上일 때로 한다.

1. 소나무類 : 50 *cm*
2. 낙엽송類 : 30 *cm*
3. 편 백類 : 50 *cm*
4. 참나무類 : 20 *cm*
5. 전나무類 : 50 *cm*

第 11 條(伐採方法과 面積) 伐採方法은 伐区式 択伐作業에 依하며 1 個所의 伐採面積은 5 *ha* 未滿으로 하고 択伐率의 用材林에 있어서는 現在蓄積의 30 % 其他林은 10 % 以內로 한다.

第 12 條(伐区間의 距離) 伐区와 伐区間의 距離는 1 *km* 以上으로 한다.

第 13 條(伐採禁止) 다음 各號의 1 에 該當하는 個所에는 伐採를 禁한다. 다만, 公園事業執行을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學術研究上 必要한 山林
2. 史蹟 天然記念物 名勝地 等에 生立한 立木
3. 岩石地 急傾斜地 능선 周圍에 生立한 立木
4. 道路와 鐵道 沿邊으로써 200 *m* 以內의 山林

第 14 第(可視区域內 伐採) 道路나 鐵道沿邊으로서 2 *km* 以上 可視区域에 該當하는 伐採는 別表 Ⅱ圖面과 같이 横式帶状皆伐로서 伐区帽이 風致觀望 視點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第 14 條의 2(被害林木에 對한 例外) 솔잎혹파리等 山林病虫害로 인하여 第 8 條第 1 項第 4 號에 該當하는 林木에 對하여는 第 9 條, 第 11 條, 第 12 條, 第 13 條 및 第 14 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皆伐하여 乃虫性 樹種으로 造林할 수 있다. 다만 人工造林이 困難한 地域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15 條(公園区域內 山林経營計劃) 公園区域內에서 山林施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이 指針에 의한 山林経營計劃을 作成하여 公園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 16 條(公園保護区域의 山林施業) 自然公園法 第 19 條의 2 에 의하여 設定된 公園保護区域의 山林施業에 對하여는 이 指針을 準用한다.

別表 1

間伐時의 最小限残存基準表

平均胸高直径 (*cm*)	6	8	10	12	14	16	18	20
正常立木本数 (*ha*當)	2,400	1,740	1,400	1,150	980	820	730	630

別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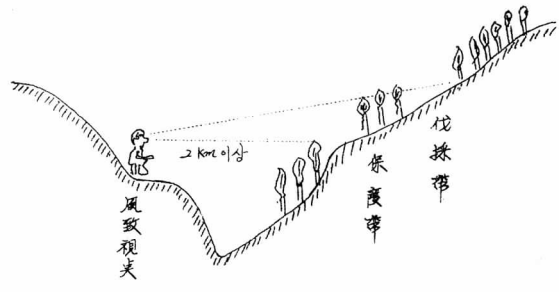
道路鉄道沿辺可視地域伐採模型圖